

대전지방법원 2022. 11. 2 선고 2022가단11452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신용보증기금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욱

피 고 A
변 론 종 결 2022. 10. 19.
판 결 선 고 2022. 11. 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,198,598원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(원고는 2022. 9. 22.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.)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

판사 박우근

청 구 원 인

1. 당사자의 관계

가. 원고는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유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이고,

나. 피고 A는 B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는 자로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신용보증의뢰인이며,

다. 피고 C은 위 A와 인척관계로 추정되는 자로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수익자입니다.

2. 신용보증약정의 체결

가. 원고는 위 A와의 사이에 아래표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(갑 제1호증 신용보증약정서 참조).

약정내용	약정일자	보증금액
계별거래	2020.11.13.	19,000,000

나.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위 A는 위 신용보증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의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대위변제를 할 경우, 위 신용보증약정서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과 ②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③ 기타 부대비용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(갑 제1호증 신용보증약정서 참조).

3. 신용보증서의 발급 및 대출 실행

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소외 D 은행 온양온천지점(이하 '소외 은행'이라고만 합니다.)에 아래표와 같은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, 위 A는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습니다(갑 제2호증 신용보증서 참조).

발급일자	보증번호	보증원금	보증기한	대출금
2020.11.13.	E	19,000,000	2025.11.12.	20,000,000

4. 구상채권의 발생

위 A는 위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2021. 6. 24. 폐업으로 최초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, 이후 2021. 10. 28. 최종적으로 부실처리가 되었으나,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(갑 제3호증의 1 사업자등록상태조회, 갑 제3호증의 2 부실처리품의서 참조), 원고가 소외 은행에 2021. 11. 24.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금 19,151,583원을 대위변제하였으나(갑 제4호증 대위변제증서 참조), 위 A로부터 같은 날 금 678,840원만을 지급받아 현재 나머지 금 18,472,743원(금 19,151,583원 - 금 678,840원)을 상환받지 못하고 있습니다(갑 제5호증 관리기업종합정보표 참조).

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의피인인 위 A에 대하여 위 금 18,472,743원의 구상금 청구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.

5.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 및 확정손해금

- 가.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대위변제일인 2021. 11. 24.부터 현재까지 연 8%입니다(갑 제6호증 기간별손해금률변동표 참조).

나. 원고가 소의 은행에 2021. 11. 24. 대위변제한 후 위 A로부터 같은 날 상환받은 위 금 678,840원에 대한 확정손해금은 금 148원입니다(갑 제7호증 확정손해금계산근기 참조).

6. 대지급금

원고가 위 약정에 따른 구상금 청구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후 상환받지 못한 법적절차비용은 금 406,382원입니다(갑 제5호증 판리기업종합정보표 참조).

7. 손해행위

가. 위와 같이 원고는 위 A에 대하여 위 금 19,157,596원(미수대위변제금 18,472,743원 + 확정손해금 148원 + 대지급금 406,382원) 및 이에 대한 원고 소정의 이자채권이 있는바, 위 A는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최초 신용보증사고 발생 4개월여 전에 자신의 소유인,

나.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. 2. 24. 수익자 피고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등기계 2021. 3. 11. 접수 제2228호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C에게 경료하였습니다(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각 등기부등본 참조).

다. 손해행위위소의 피보전채권의 성립

(1) 원고와 위 A는 2020. 11. 13. 이 사건 이 사건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(갑 제1호증 신용보증약정서 참조),

- (2) 위 A는 2021. 6. 24. 사업장폐업으로 최초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며(갑 제3호증의 1 사업자등록상태조치 참조), 위 신용보증사고 발생 4개월 전인 2021. 2. 24. A는 친인척으로 추정되는 수익자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의 채권은 당연히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하겠습니까 (이 사건 소재기 후 피고들 사이에 친인척관계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입증하도록 하겠습니까.).

라. 채무자 A의 채무초과

- (1) A의 적극재산

채무자 A는 사해행위시점인 2021. 2. 24.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은 없었고,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금 91,280,000원입니다(갑 제9호증의 1 재산조사표, 갑 제9호증의 2 가격자문보고서 참조).

- (2) A의 소극재산

위 사해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A의 소극재산 및 가액은 아래표와 같습니다(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각 동기부등본, 갑 제10호증 신용정보조회서 참조).

번호	채 권 자	채권액	채권발생일	내용
1	신용보증기금	19,000,000	2020.11.13.	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사건구상금
2	F 조합	54,709,000	2019.8.19.	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대출 잔존채무액
3	G 조합	30,000,000	2007.3.5.	신용대출
4	H 은행	4,152,000	2018.4.29.	신용대출
5	H 은행	5,699,000	2018.7.25.	가타 담보대출
6	I 카드	1,524,000	2019.3.22.	대출
7	충남신용보증재단	20,219,000		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사건구상금
	합계	135,303,000		

- (3) 위와 같이 위 A는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처분행위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였고, 수익자인 피고 C와의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에 따라 무자력상태에 이르렀다 할 것입니다.

마. 피고들의 사해의사

- (1)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거래가액은 80,000,000원입니다(갑 제8호증의 1 등기부등본 참조).
- (2) 한편,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 A에게서 수익자 C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A 명의의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등기계 2019. 8. 19. 집수 제8942호 채권최고액 72,000,000원, 채권자 F 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에 관한 채무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, A는 이 사건 부동산에 현재까지 거주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
- (3) 피고들은 친인척 사이로 추정되고, 이 사건 (사건)구상금채권의 발생 원인이 피고 A의 폐업인 점을 감안한다면 피고 A는 운영하던 사업장이 어려워지자 친인척인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료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엿볼수 있고 이는 피고들의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습다.
- 바. 위와 같이 위 A는 위 구상금채무를 면하고자 채권자를 해함을 잘 알면서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수익자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또는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킴으로써 공동담보의 부족 내지는 상실을 초래하게 한 사해행위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.

8. 결 론

그러므로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,

가. 피고 A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위 금 18,879,273원(미수대위변제금 18,472,743원 + 확정손해금 148원 + 대지급금 406,382원) 및 그 중 미수대위변제금 18,472,743원에 대하여 이 사건 대위변제일인 2021. 11. 24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원고 소정의 연 8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 소정의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,

나. 수익자인 피고 C에 대하여는 사례행위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21. 2. 24.자 매매계약의 취소 및 이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,

각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.

9. 합의관할에 대하여

원고는 이 사건 약정 당시 위 A와의 사이에 이 약정에 의한 채권관리 담당 영업점 소재지 관할법원을 합의관할로 약정하였는바(갑 제1호증 신용보증약정서 제15조 제4호 참조), 원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채권관리 담당영업점인 신용보증기금 대전제기지지원단(갑 제4호증 대위변제증서 참조)의 관할법원인 귀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.

변경된 청구원인

1. 채권일부 회수

가.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후 소외 C로부터 금 19,931,274원을 회수하였습니다.

나. 위 회수한 금원 중 금 18,472,743원은 구상채권 원금에 충당하였고, 나머지 금 1,458,531원은 대지급금에 충당하였습니다(갑 제11호증 관리기업중합정보표 참조).

다. 원금회수 처리한 위 금 18,472,743원에 대한 확정손해금은 금 1,198,598원입니다(갑 제12호증 확정손해금계산근기 참조).

2. 그렇다면,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확정손해금 1,198,59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취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.

